

[서식 예] 검증 및 감정신청서(공유물 분할)

검증 및 감정신청

사 건 00가합0000

원 고 000

피고 000

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- 1. 검증 및 감정할 장소 서울 00구 000동 000
- 2. 검증할 목적

위 장소 소재 토지(대 739.8㎡)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물분 할에 따라 각자가 분할 받을 면적을 산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함

3. 감정할 목적

위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가 분할 받을 부분을 귀원이 지정하는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감정하게 하기 위함.(위 피고로서는 현재 점유부분인 별지도면상의 고, 노, 도, 로, 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을 포함한 부근 토지를 분할받기를 원하며, 그것이 어렵다면 위 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, 위 피고의 지분에서 위 ①부분의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는 위 도면상의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할 선내 ② 부분으로 분할 받기를 원함)



* 첨부 서류 : 토지 도면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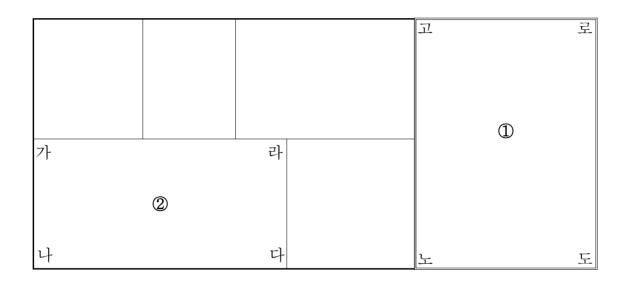
2000. . .

피고 0 0 0



[별 지]

토지 도면 (서울 00구 000동 00)



끝.



제출법원	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
신청기간	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289 조).
검 증 의 의 의	법관이 직접 자기의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, 듣고,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.
검 증 의 대 상	검증은 자동차사고의 현장, 각종 공사장, 기계의 상황, 토지의 경계상황 등과 같이 주로 시각에 의하여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많이 활용되나, 소음 가스의 냄새 등 청각 또는 후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.
감 정 의 의 의	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,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위한 증거조사임.
감 정 의 대 상	• 법규 : 외국법규, 관습 • 사실판단 : 교통사고원인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, 필적 • 인영의 동일 성, 토지 • 가옥의 임대료, 공사비, 혈액형,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
기 타	 · 감정인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"부동산 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2-2)" 참조 ·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. 다만,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(민사소송법제336조). ·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.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